

단국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과 운영

융 합 시 스템 공 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융합시스템공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8. 01 추가)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융합시스템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2018. 01 추가)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융합시스템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융합시스템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2018. 01 추가)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석사교육과정)

1.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33학점 이상 [전공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9학점(2~4학기신청)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2018. 01 추가)
2. 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교과목, 융합선택 교과목, 산학프로젝트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일반대학원의 관련전공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며, 최소 6학점 이상 12학점 이하로 이수하여야 한다. 타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융합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융합선택 교과목은 최소 6학점, 최대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산학프로젝트 교과목은 최소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3 수정)
5.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융합필수 교과목, 융합선택 교과목, 산학프로젝트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016.3 추가)
6. ‘융합제조공학개론’, ‘솔루션설계 및 구현’, ‘융합연구방법론’ 교

과목을 융합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며,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융합필수 학점으로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3 추가)

제5조 (박사교육과정) (2018. 01 추가)

1.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전공학점 36학점, 연구지도학점 9학점(2~4 학기신청)을 포함하여 총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18. 01 추가)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45학점 중 융합필수 교과목인 ‘융합연구방법론’, ‘융합제조공학개론’, ‘솔루션설계 및 구현’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 01 추가)
3.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45학점 중 융합시스템공학과에 개설된 융합선택 교과목에서 총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 01 추가)
4. 타전공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융합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8. 01 추가)

제4장 논문지도

제6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교수를 지도교수로 희망할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에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2018. 01 추가)

제5장 자격시험

제7조 (종합학력시험)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함)한 자로 한다.

제8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 종합학력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2018. 01 추가)

1. 평가방법은 필기시험과 또는 구두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이며 불합격 과목은 다음 학기 재시험을 볼 수 있다. (2018. 01 추가)

2. 석사과정은 응시교과목은 전공필수 1 과목, 융합선택 1 과목으로 총 2 과목으로 한다. 단,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거쳐 응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추가) 2015년 9월 입학학생부터는 융합필수 교과목들 중 1 과목, 융합선택 교과목들 중 1 과목으로 하며, 총 2 과목으로 한다. (2016.02 수정)

3. 박사과정의 종합학력시험은 전공필수 교과목들 중 2 과목, 융합선택 교과목들 중 2 과목으로 총 4 과목으로 한다. 단,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 교과목을 교수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018.01 추가)

3. 각 과목 출제는 1명의 교수가 출제하며, 교수 1인당 1과목만 출제한다.

4. 융합디자인전공 학생은 국내외학술논문을 2편 게재한 경우, 종합학력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그 외의 학생의 경우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에 따른다. (2018. 01 추가)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 게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써 게재승인서(acceptance letter)를 제출하는 경우,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인정한다. 게재증빙서류는 종합학력시험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자격시험면제를 인정한다. 논문의 경우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의 사사를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사사인 경우도 인정한다. 발표한 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공동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대체될 수 있다. (2016.3 추가)

국문	이 논문은 201x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N0000717)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KOREA,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 for Creative and Industrial Convergence. (Grant Number N0000717)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다음의 성과를 얻은 경우, 종합학력시험 과목들 중 1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SCI(E)급 학술지 논문게재시(제1저자),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제1저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게재 2편(제1저자), 국내외학술대회 논문상 수상(제1저자), 국내외 경진대회/공모전 수상(제1저자)시 건당 1과목(제1저자)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2018. 01 추가)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 내국인 학생 : 영어
 - 외국인 학생 : 영어와 한국어 중 선택(영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만 가능)
- (2018. 02 추가)

제11조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외국어 시험면제기준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2018. 01 추가)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선택) 본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은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8. 01 추가)

제13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2018. 01 추가)

제14조 (석사학위명) 석사학위의 국문 학위명은 공학석사(전공명)으로 표기한다. 영문 학위명은 Master of Engineering in 전공명(영문)으로 한다. (2018. 01 수정)

예) 융합디자인 전공의 경우,

 국문 : 공학석사(융합디자인)

 영문 : Master of Engineering in Convergent Design

제15조 (박사학위명) 박사학위의 국문학위명은 공학박사(전공명)으로 한다. 영문 학위명은 Philosophy Doctor of Engineering in 전공명(영문)으로 한다. (2018. 01 추가)

예) 융합디자인 전공의 경우,

국문 : 공학박사(융합디자인)

영문 : Philosophy Doctor of Engineering in Convergent Design

제7장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제16조 (논문심사위원) 심사위원 선정은 주임교수가 학위논문 심사신청자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 3인, 박사 5인(교내 3인(전임교원, 특별교원), 교외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과정 논문심사에 있어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2018. 01 추가)

1.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예·체능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업적이 많은 학계의 권위자 또는 제출논문과 관련된 전문실무분야 경력소유자도 가능하다. (2018. 01 추가)
2. 교외인사는 학기당 3편이하의 논문심사만을 맡도록 한다. (2018. 01 추가)
3.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2018. 01 추가)
4.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018. 01 추가)
5. 연구년제인 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최종논문심사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018. 01 추가)

제17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박사학위의 경우 2학기 내에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과 학과주임교수, 전임교원 2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018. 01 추가)

제18조 (논문예비심사)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위과정 6학기를 이수 한 후부터, 매 학기 초에 논문예비심사를 신청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신청 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단, 논문예비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논문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1 추가)

제8장 졸업요건 (2016. 03 추가)

제19조 (석사학위 졸업요건)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

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졸업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논문심사일 전까지 특허 1편을 출원하고, 출원증명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융합디자인 전공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에 게재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논문심사일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 논문 게재증명서(acceptance letter)를 제출하는 경우, 논문 게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0조 (박사학위 졸업요건)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전까지 SCI(E) 논문 1편 게재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논문심사일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 논문 게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게재로 인정한다. 논문게재증명서로는 게재승인서(acceptance letter)까지 인정한다. (예체능계 제외) (2018. 01 추가)

2.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전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 2편 게재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논문심사일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 논문 게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게재로 인정한다. 논문게재증명서로는 게재승인서(acceptance letter)까지 인정한다.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제외) (2018. 01 추가)

제9장 학과 운영위원회 (2018. 01 추가)

제21조 (총칙)

1. **(명칭)** 본 위원회는 창의산업육성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위원회(The Creative Human Resources Education Program)라 칭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단국대학교 창의산업육성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에 관한 학문 연구와 교육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의 융합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 i. 학문연구 및 지식보급
- ii.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iii. 융합시스템공학과와 발전과 확장
- iv. 연구의 장려 및 융합형 인재의 배출
- v.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 vi.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4. (사무소의 소재지) 본위원회의 사무소는

- i. 본 위원회의 주사무소는 단국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과 학과사무실에 둔다.
- ii. 본 위원회의 현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52 단국대학교 글로벌 산학협력관 서관 103호에 둔다.
- iii. 지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2조 (위원회 위원)

(위원의 종류) 본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1. 학교 內 교수위원 : 본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교수
2. 학교 外 교수위원 : 본 교육사업에 관심이 높고 이와 비슷한 융합 교육 사업을 수행한 교수
3. 학교 外 기업 및 전문위원 : 본 교육사업에 목적을 지지하는 기업 및 연구소등 전문가 위원

제23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은 본 교육 사업에서 구축된 융합시스템공학과와 참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며 필요에 의해 정기위원회 및 비정기 위원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본 위원회는 위원장의 선임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재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의결하며, 안건의 상정 및 협의사항의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수행한다.

제25조 회의

(회의의 종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 및 비정기 위원회로 나뉜다.

제26조 위원회의 소집

1. 정기위원회는 각 학기 별 3회를 기본으로 하며 비정기 위원회는 위원 중 5명 이상의 결의가 있을 시 소집 가능하다.
2. 위원장은 중요안건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정기 및 비정기 위원회의 일정을 조정 가능하다. 단 위원장은 정기위원회의 소집을 위하여 30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소식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정기위원회의 기능) 정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과 및 사업단의 인원변경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해산)

본 위원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단, 2014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각 조항은 학과 교수 회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 단 개정된 규정은 개정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된다.
3.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4. 변경된 내규는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